

2023. 11. 20(월)

사진: 유 / 무

쪽수: 3쪽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0일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

RICON

대한건설정책연구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, 13층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)

< 자료문의 > ☎ 02-3284-2600, 대한건설정책연구원 (ricon@ricon.re.kr)

### 전문건설사 96.8%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응 미흡

- 최소 2~3년 적용 유예,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실정에 맞게 법령 개정 필요-

- 2년 유예기간을 거쳐 '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) 사업장까지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-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(원장 김희수)은 대한전문건설협회(회장 윤학수)와 함께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-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,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실제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, 인력·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.6%에 그친 반면, 응답기업 96.8%가 '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'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(그림 1 참조).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'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(67.2%)', '비용부담(24.4%)', '전문인력 부족(8.4%)'으로 파악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,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따라서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(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) 사업장에 대해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적용대상 제외(51.5%)하거나 3년 유예(26.5%)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(그림 3 참조).
- 아울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(51.2%), 안전보건의무 축소(34.4%)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(그림 4 참조). 특히, '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'(32.3%), '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(24.8%)', '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(12.4%)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(그림 5 참조).
-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~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,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

붙임: 781곳 전문건설사 설문조사 결과

붙임: 781곳 전문건설사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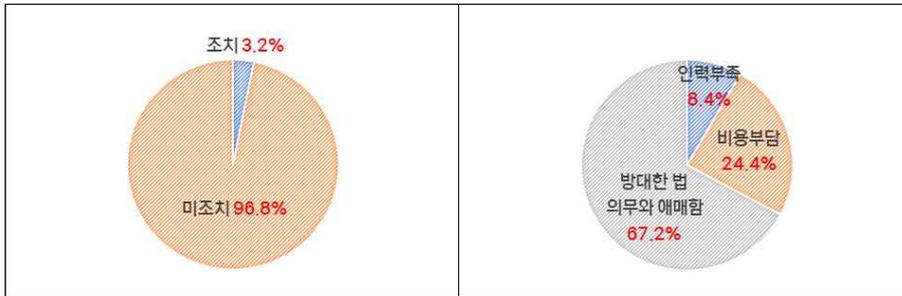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「중대처벌법」 대응조치 여부

그림 2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준비 미흡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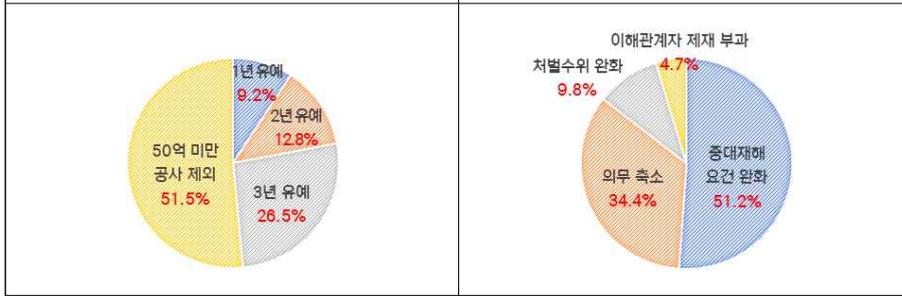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

그림 4.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선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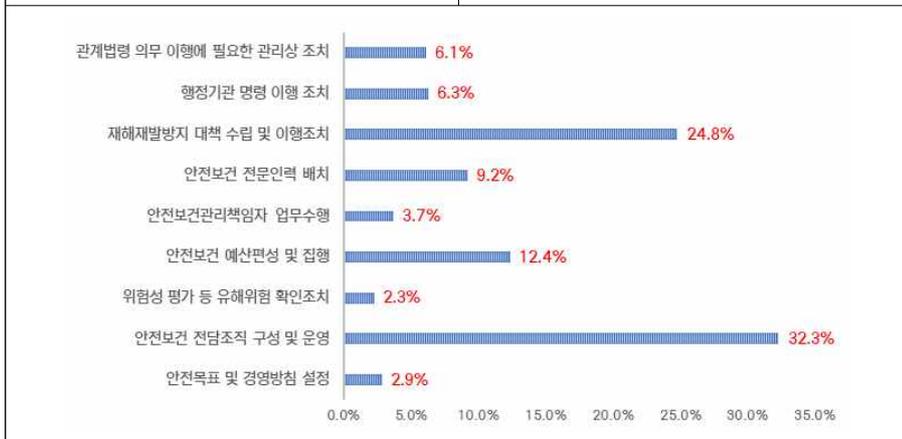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영세 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